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따르면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MRI)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전속으로 1명 이상 두어야 함, 이로 인해 진료현장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의 구인난이 발생하고, 특히, 의료취약지 등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기 어려워 배치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음. 이에 영상의학과 전문의 배치기준을 비전속 1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법 제38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0000.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의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 운용인력기준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전속”을 “비전속”으로 하고, 같은 호 중 “비고”를 “비고 1”로 하며 같은 호에 “비고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2. 전속은 1개의 의료기관에서 주 4일 동안 32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는 경우, 비전속은 1개의 의료기관에서 주 1일 동안 8시간 이상(다만, 유방촬영용장치의 운용인력기준 중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분기별 1일 동안 8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인정기준(제3조 관련)

1. 운용인력기준

특수의료장비의 종류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	전산화단층 촬영장치	유방촬영용장치
항목				
용도구분		전신용 두부, 척추 및 관절 전용 두부전용 척추전용 관절전용 척추 및 관절 전용 두부 및 척추 전용 두부 및 관절 전용	전신용 비조영증강 전신용 두부전용 척추전용 두부 및 척추전용	유방용
운용 인력 기준	영상의학과 전문의	비전속 1명 이상	비전속 1명 이상	비전속 1명 이상
	방사선사	전속 1명 이상	전속 1명 이상	비전속 1명 이상

비고 1. 유방촬영용장치를 운용하는 전문의로서 영상의학과전문의가 아닌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품질관리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고 평가에 합격한 경우에는 본인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유방촬영용장치 운용인력으로 3년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으며 3년마다 재교육을 이수함으로써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전속은 1개의 의료기관에서 주 4일 동안 32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는 경우, 비전속은 1개의 의료기관에서 주 1일 동안 8시간 이상(다만, 유방촬영용장치의 운용인력기준 중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분기별 1일 동안 8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